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9.

국 토 교 통 부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신청, 건설기계 양도·양수 신고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감염병·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기를 변경·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면허증 서식을 개선하고, 기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 1)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시 본인소유의 건설기계는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나.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66조의3)

- 1) 건설기계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토록 한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및 지위승계 증명 서류는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변경·연장(안 제83조)

- 1)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장관은 교육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2) 국토부장관은 교육을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 공고하도록 함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인터넷 교육 방법 추가(안 별표 22의2)

1) 강의·시청각 교육 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도 추가

마.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0)

1) 사업자(대표자) 개인주소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7)

1) 개인정보 최소화를 위해 면허증 서식에 기재토록 한 주민(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기재토록 변경

2) 건설기계 조종사가 적기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의3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교육의 시행 또는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2의2의 비고란 5의 “강의 또는 시청각”을 “강의·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로 한다.

별지 제30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등)	제11조(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 ----- ----- ----- ----- ----- ----- ----- ----- ----- <u>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1.~3. (생략) ②~③ (생략)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 ----- ----- ----- ----- -----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u>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u>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③ 생략 <u>〈신설〉</u>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③ 생략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교육의 시행 또는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u>

<u>〈신설〉</u>	⑤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	---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제83조제2항 관련)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1시간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결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 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 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비고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4.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5. 안전교육등은 강의·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제 호

건설기계 ☐ 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사업자등록번호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 면적 m²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m²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보유건설기계 및 연명등록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명 등 록 자	1				
	2				
	3				
	4				
	5				
	6				
	7				
	8				
	9				
	10				
	11				
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제 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성명		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주소			
국적			
발급일자			
적성검사유효기간	. . . ~ . . .		
소지면허			
위의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86mm×54mm[PVC(비닐)980.4g/㎡]

(뒤 쪽)

연 월 일	기 재 사 항 변 경	확 인 인
* 적성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6mm×54mm[PVC(비닐)980.4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44